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37호

『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27일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*과 위탁 업무를 고시하도록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이 개정(시행 2013.6.12)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

* (수탁기관) 중소기업중앙회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(업무의 위탁) 제2항

3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별 위탁업무를 명시(안 제2조)
 - ① (중소기업중앙회)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,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실시 및 지원업무를 위탁

- ② (중소기업진흥공단)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, 연수업체 인증에 관한 업무,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,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·확산업무를 위탁
- ③ 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,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탁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(인력개발과)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내용
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(인력개발과)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- 우편 :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
- 팩스 : 042-472-3278

○ 문의 :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(042-481-4365)

○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<붙임 >

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(안)

제정 2013. 00. 00.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- 00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와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의 위탁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.

1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
 - 가.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
 - 나.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
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
 - 가.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
 - 나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 인증에 관한 업무
 - 다.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,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·확산
3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
 - 가.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
 - 나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
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00월0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